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법령준수)"를 "(근무기강의 확립)"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봉사)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를 분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은 주권자인 주민의 수임자로서 항상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삭제>
<p>제5조(친절)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와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7조(법령준수)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7조(근무기강의 확립) ①</p> <p>.....</p> <p>.....</p> <p>②</p> <p>.....</p>
<p>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제13조(근무시간)</p> <p>.....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